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1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26.

발의자 : 김중로 · 장정숙 · 김종회

채이배 · 조배숙 · 최도자

김광수 · 정인화 · 박준영

이용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, 계급,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,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.

특히,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 · 복무기관, 병과 · 특기 및 직위 ·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호나 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다목 · 라목 신설).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

다. 병과 및 특기(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)

라.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

제3조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병과 및 특기(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)

라.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 사항)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(이하 “신고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	제3조(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 사항)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	3. 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나.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다. 병과 및 특기(군인의 경 우에 해당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라.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 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</u>
<u>나. ~ 반. (생 략)</u>	<u>만. ~ 자. (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)</u>
4. 현역 · 보충역 · 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	4. -----.
가. · 나. (생 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<u>&lt;신 설&gt;</u>	<u>다. 병과 및 특기(군인의 경 우에 해당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라.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 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</u>
<u>다. · 라. (생 략)</u>	<u>마. · 반. (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)</u>
<u>5. (생 략)</u>	<u>5. (현행과 같음)</u>